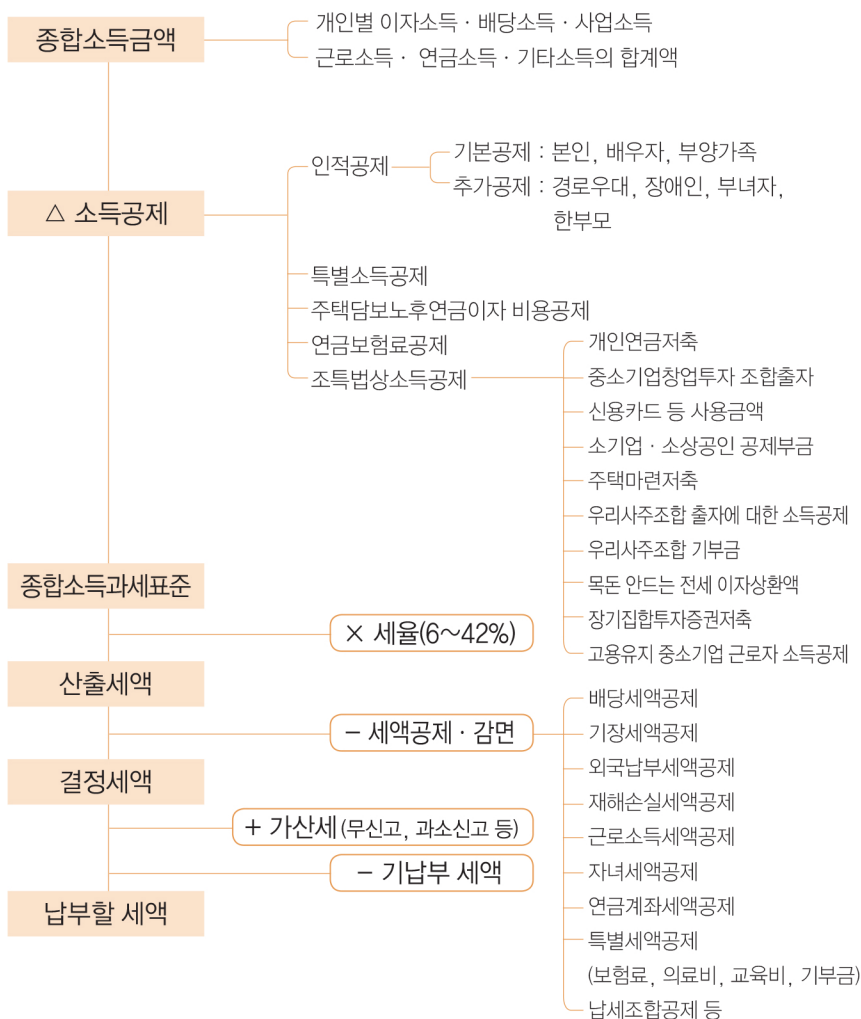


0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

세금계산 구조는 직접적인 절세방안은 아니나 이를 알고 있으면 효과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에 간단히 소개한다.



위와 같이 우리가 내야할 세금은 연중 여러 분야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지만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각각 별도로 계산되는 소득도 있어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이렇다.

◆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

과세방법	소득종류	적용기준
종합과세*	이자·배당 소득	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*
	근로·사업소득	무조건 종합과세
	연금소득	• 공적연금소득 (무조건 종합과세) • 사적연금소득 (1천2백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)
	기타소득	3백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(기타소득금액) (3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선택가능)
분류과세**	양도소득	양도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
	퇴직소득	퇴직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

* 이자·배당·근로·사업·연금·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

**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과세

따라서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·배당소득(금융소득)이나 사적연금 총연금액 1천2백만 원 이하 연금소득 및 3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이자나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*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.

*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것

또한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각각의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▶ 관련 법규 : 소득세법 제14조